
자살보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살보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김 창 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목 차

- I. 서론 - 왜 자살보도가 문제인가
- II. 본론 - 어떤 유형이 문제인가
 - 1. 자살보도의 문제유형
 - 2. 법과 제도의 문제
 - 3. 언론환경의 문제
- III. 결론 및 대안제시 - 어떻게 해야 하나
 - 1. 언론사와 기자의 관점에서
 - 2. 미디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 3. 언론중재위원회의 관점에서

I. 서론 - 왜 자살보도가 문제인가

2010년 10월 ‘행복전도사’로 유명한 작가 겸 방송인이었던 최윤희 씨의 자살이 한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방송에서 행복과 희망을 전파하던 최씨의 말과 표정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은 자연스럽다. 저널리즘의 극적 요소를 갖춘 최씨의 자살 사건은 대서특필됐다.

올 상반기에는 2년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국민배우’ 최진실 씨의 친동생 최진영 씨마저 자살해 또다시 국민을 놀라게 했다. 최씨의 두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던 약속은 허언이 됐다. 이제 두 자식을 자살로 먼저 보낸 늙은 어머니가 두 손주를 말아야 하는 기막힌 사정이 된 것이다. 어찌 유명인들의 자살뿐이겠는가.

‘자살’이 유행병처럼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경제선진국 모임, 오이시디(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은 한국은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2009년 자살률은 2008년 대비 19.3%, 10년 전인 1999년 대비 107.5%가 증가할 만큼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예방과 사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²⁾

2009년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5,413명으로 2008년 1만2,858명에 비해 1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2.2명, 34분에 한명 꼴로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통계수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악화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결과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자살률이 늘어나고 미디어의 자살보도의 문제점이 심화되면서 언론단체, 사회단체 등이 합작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 2004년 ‘자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살 장소, 방법 등의 묘사 및 사진 게재 자제 △자살동기 단정적 보도 피할 것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지 말 것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지 말 것 등의 보도 윤리규정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런 권고기준들이 저널리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모니터 결과, 2010년 1~8월 자살관련 언론보도 271건 가운데 88건(33.1%)이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광병찬 논설위원은 자신의 칼럼, ‘자살보도지침(2008. 10. 6.자)’에서 “언론사들은 적극적인 협조와 준수를 다짐했지만, 말뿐”이라며 “(언론이) 자살 바이러스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을 정도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자살관련 시정권고를 해당 언론사에 통보해 왔지만

2) 2010.11.23. 현재 자살예방과 관련해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2010.11.8.) 「자살예방대책법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2009.3.25.) 「자살예방법안」, 임두성 의원 대표발의(2008.9.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계류 중이며, 김인호 서울시 시의원(민주당 동대문3지역구)은 2010년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자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상황은 개선되지 못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004년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시정권고를 한 횟수는 21건(2004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말 현재 1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까지 가세하면서 미디어 환경은 급변하는 가운데 자살보도의 심각성과 피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 대책과 법, 제도적 정비는 소홀음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살보도의 문제유형, ▲법과 제도의 문제, ▲언론환경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II. 본론 - 어떤 유형이 문제인가³⁾

1. 자살보도의 문제유형

가. 자살자 신원공개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인들에 대한 신원공개는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됐다.

시정권고 사례
「24일 오전 11시쯤 평택시 이충동 모 아파트에서 △△보건소 직원 박모(44·운전기능직 8급)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친형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 (○○일보 2010년 9월 27일자 19면)
「 -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전 10시21분쯤 동해해경소속 1500t급 경비함정 △△호 예인실에서 이 함정 소속 함 모(20·춘천시) 일경이 예인기에 밧줄로 목을 매 숨

3) 자살보도 유형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동안 언론사를 상대로 시정권고를 해 온 기준을 준용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널리즘 차원에서 중요한 유형이라고 판단한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저 있는 것을 동료 전투경찰대원이 발견해 상급자에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 -。」

(○○○○일보 2010년 9월 1일자 5면)

- ※ 원 보도에서는 기관명, 지명, 인명 등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으나 본 발제문에서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 처리함. 이하 시정권고 사례 등에서도 동일
- ※ 고위공무원, 연예인, 대기업 부사장, 유명 대학교수 등 사회 저명인사의 자살 또는 공공의 관심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하였음. 반면, 하급 공무원, 연예인 매니저 및 연예기획사 대표, 일반기업 간부 등 공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권고 함

나. 자살방법 상세묘사

자살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모방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모든 윤리강령에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부주의나 무지 때문에 자살방법, 약품구입 경위, 효능까지 자세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모방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정권고 사례

「 - - 당시 일본 경찰은 카와다가 운전석에서 상체를 조수석으로 둔 채 엎드려 있었고 뒷 좌석에는 연탄난로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탄가스 질식사로 인한 자살 방식은 일본 내에서 죽은 모습이 자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는 이미 많은 자살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안재환 역시 카니발 차량에 연탄 화덕과 2장의 연탄이 발견 됐다. - - -。」

(○○○○신문 2010년 9월 9일자 연예면)

다. 유족 사생활 공개

유족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금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 등에서 불필요한 동정이나 놀림감, 왕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록 선의라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도록 권하고 있다.

2009년 10월 5일 오전에 방송된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는 최진실이 이 세상을 떠난 지 1주기를 맞아 재안장식과 함께 추모식 현장 스케치를 전했다. 이 방송에

서 어린 두 자녀의 얼굴과 신상이 고스란히 방영됐다. 인터넷 매체 ‘○○○’에서는 10월 5일자 기사제목으로 “최진실 아들, 딸 ‘엄마잃은 미소’에 울컥! 시청자는 울었다”라고 보도했다.⁴⁾

라. 자살을 미화하는 보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동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지어 때로는 영웅시, 순교자식으로 묘사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기게 하는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정권고 사례
「“추한 모습은 남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추하게 살고 싶지 않다.” 故 △△△(59) 진안 정천면장이 살아생전 평소 지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 중략 -- 지난 4일 저녁 8시5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이란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고 이 면장의 최후에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 -.」 (○○일보 2010년 3월 8일자 6면)

마. 추측성 보도

자살보도에서도 부정확한 추측이 난무하는 보도를 보게 된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다분하지만 경찰자료나 자체 취재로 확인없이

4) 미디어 오늘, 김창룡의 미디어창(2009.10.5.) <"시청률 올리기 위해 사생활쯤이야?...">

유명 연예인, 배우 등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매스컴의 과도한 관심과 조명속에 이들 가족가운데 미성년자들의 신원이 여과없이 공개되고 있지만 어디서도 문제제기가 없다. 특히 전파력과 영향력이 큰 TV 방송에서 현재처럼 공인의 자녀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도해도 좋은지 제작진들에게 되묻고 싶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제목과 기사내용에서 ‘아이들도 어머니 추모식인 것을 안다’면서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처럼 아이들의 얼굴과 신원이 노출되면 학교나 주변에서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법에서는 아이들의 경우, 부모나 친권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신원공개가 가능하다고 한다. 묵시적 동의가 아닌 명시적 동의라고 분명히 적시한 것은 그만큼 아이들의 신원공개는 신중하고 제한된 범위내에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인권단체는 이런 매스컴의 무분별한 미성년자 신원공개에 따른 인권침해나 사생활침해에 대해 성명서라도 하나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후략)

보도하는 경우는 쉽게 목격된다.

연구자는 일전에 ‘내연녀와 짝사랑 사이’라는 현역 경찰관 자살 사건과 관련한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⁵⁾ 현역 경찰관이 한 여인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한 끔찍한 사건을 2009년 4월29일 주요 뉴스로 다룬 내용이었다.

연합뉴스는 이 사건을, “29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경암동의 한 미용실에서 나운지구대 소속 조모(46) 경위가 짝사랑하던 이모(36.여)씨의 머리에 권총을 쏘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조 경위가 짝사랑하던 이모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조선, 동아일보 역시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이렇게 보도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군산발 기사로 “현직 경찰관이 평소 흠모하던 30대 여인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것을 ‘흠모하던’ 정도로 표현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내연녀’로 단정하여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4월 29일자 홈페이지에 “군산서 현직 경찰, 내연녀 권총 살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정작 기사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내연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중앙일보의 현장기자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서 “미용실 여주인을 좋아하던 조 경위가 이날 미용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순간적으로 권총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맞다면 조선, 동아, 연합뉴스가 틀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런 추측식 보도는 유가족에게 또 다른 문제, 그 희생자는 그 희생자대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다.

바. 유족 근접 촬영

대부분 선진언론에서는 유족의 통곡이나 슬픔을 클로즈업 하거나 근접촬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슬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원거리

5) 미디어 오늘, 김창룡의 미디어창(2009.4.29.) <내연녀와 짝사랑 사이>

촬영으로 현장분위기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다. 그런데 상당수 한국 언론은 유족의 비통한 모습, 심지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등을 근접촬영하여 보도한다. 최진실 씨에 이어 최진영 씨 자살사건이 보도됐을 때 어머니의 통곡하는 모습은 여과없이 보도됐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남의 불행을 미디어 상업주의에 악용하는 결과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사. 영안실 등 유족 지인 경쟁촬영

언제부턴가 대중 스타의 자살은 공중파방송, 케이블 방송사 가릴 것 없이 ‘연예프로그램’에서 대중스타들의 자살에 따른 영안실 풍경을 생중계할 정도로 주목도가 높은 취재거리가 됐다.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오는가, 누가 어떤 슬픈 표정으로 통곡했는가, 누가 나타났는가, 누가 얼마나 애도했는가 등이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매스컴의 과잉보도, 과잉관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프로그램 시청률을 위한 것일 뿐이다. 자살자들에 대한 매스컴의 과잉 관심은 또다른 형태의 사회적 부작용을 심화시킬 뿐이다.

탤런트 박용하 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을 당시 김형준 등 대중스타들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는 모습을 TV 카메라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취재했다. 이 자체가 새로운 뉴스거리가 됐다.

2. 법과 제도의 문제

국내에도 자살과 관련하여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현재 시정권고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생활 보호, 제2조 명예훼손 금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제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제5조 유괴사건 보도, 제6조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보호 등 법률을 바탕으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제1장 개인적 법익 보호 외에도 제2장에는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를 따로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내용을 보면 제7조 범죄묘사 부분에서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성관련 보도에서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는 보도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9조는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1항에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하는 내용”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2항에는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도 금지하고 있다. 제3항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정도로 엄하게 금하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함께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비단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생활, 명예훼손 등을 통해 개인의 법익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인 장치와는 무관하게 언론사에서 이를 반드시 지켜야할 엄수조항으로 여기지 않는 데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법익 침해는 가볍게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실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큰 데다, 설혹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보상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형편이다.

따라서 법은 존재하지만 미디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너무나 멀리 존재할 뿐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통해 보도피해에 대

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진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사의 신중한 보도, 책임있는 보도를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이외에도 언론내부의 자율규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윤리강령⁶⁾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은 언론사간 과잉경쟁과 자율규제의 유명무실화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한 규제는 법 이전에 자율규제가 존중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자율규제는 한계상황에 이른 지가 오래다. 미디어 비평 등을 포함한 내부 견제, 감시 제도는 '동업자 의식'⁷⁾속에 힘을 잃었다.

3. 언론환경의 문제

언론환경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변화하고 있다. 기성 언론에다 셀 수 없이 늘어난 인터넷 언론과 블로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역의 작은 뉴스도 급속도로 전국, 전세계로 확산된다.

매체 환경이 이렇다 보니 자살보도의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텔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방법과 현장, 도구의 출처까지 경쟁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언론이 나서서 자살 동기에 관한 '루머'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책임론도 부각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자살의 원인을 '인터넷 탕'으로 단정짓기도 하지만, 온·오프라인 미디어 모두 자살보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거의 모든 언론사가 언론윤리강령을 자체적으로 제작했거나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등을 보도준칙으로 삼고 있다. 이런 윤리강령에는 공통적으로 인권존중과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는 변화가 없다.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개인의 법익이 침해되는 빈도와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7) 언론계의 동업자 의식이란 같은 언론사끼리는 특별한 적대관계가 아닌 한 언론계 내부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관대하게 혹은 무심하게 넘어가는 관행을 말한다. 동종매체 혹은 이종매체끼리의 비판, 감시 기사는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진실 씨 사망사건 기사를 특집기사 박스 페이지로 묶어 인터넷 판 전면에 내세운 이들 신문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속보경쟁, 자살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 등으로 유명인의 자살보도에 있어 언론의 선정성 비판에 다시 불을 지폈다.⁸⁾

특히 중앙일보는 인터넷 매체에 구체적인 자살방법 및 압박붕대 구입 경로, 가격 등을 보도한 기사(‘최진실이 사용한 압박붕대는 무엇?’)를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뒤늦게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지난 안재환 씨 사망사건 당시에도 일부 언론이 자살에 이용됐다는 ‘연탄’의 출처까지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8) 미디어오늘, 김창룡의 미디어창(2008.10.2.) <애도도 추측도 멈춰라>

중국산 멜라민 공포를 일거에 쓸어버리는 인기 탤런트 최진실의 갑작스런 죽음은 전국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 불과 며칠 전에만 해도 대중 매체에서 즐거운 웃음과 생글생글한 미소를 선사하던 대중스타가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어머니 정아무개(60)씨에 의해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이 현장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이날 아침 안방 욕실 샤워부스에 압박붕대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신고했다. 일단 시신을 욕실 현장에 둔 채 조사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황상 최씨의 자살로 추정되지만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 없다. 경찰은 ‘최근 탤런트 안재환씨의 자살과 관련한 악성 루머로 최씨가 괴로움을 토로해 온 사실 등에 주목해 사망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는 시작단계지만 미디어는 각종 루머와 추측을 쏟아내며 이미 결론을 보도하고 있다. ‘사채 25억 원의 진실’ ‘왜 자살했나…우울증도’ ‘최진실 죽음, 고 안재환 죽음과 관계있다’ 등등. 미디어가 대중스타의 자살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민이 궁금해한다는 차원에서 당위성을 주장한다.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스타의 자살은 ‘잘 팔리는 특종상품’이라는 상업성이다.

연예스타 안재환의 죽음으로 이미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 현재도 ‘자살, 타살’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다 이 사건에 직, 간접적 관련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최씨의 죽음은 궁금증과 흥미적 요소를 더욱 극대화, 한동안 밀도끝도없는 루머와 추측이 대중매체를 지배하게 될 것 같다. (중략)

최진실은 살아서 국민스타로 많은 청장년층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 애도를 유보해야 한다. 언론도 추측과 루머 수준의 보도는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대중 연예인들이 앞다퉈 애도하는 모습도 보고싶지않다.

대중스타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맹목적인 시각에도 교정이 필요하다. 이들의 화려한 삶은 동경하지만 이들의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과 초라한 인간적 고민 등은 보지못한다. 너도나도 연예인이 되겠다고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도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과도한 집착이나 맹목적 숭배에 따른 어리석은 흥내내기 등은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뿐이다. 한국만큼 연예인 천국인 세상 이들 소수가 미디어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국민의 눈과 귀, 의식마저 지배하는 곳은 드물다. 이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죽은 자는 말이없고 산 자의 괴로움이 더욱 커지는 하루다.

이들 인터넷 언론들은 최진실 씨의 자살 원인으로 일부에서 제기됐던 ‘사채설 의혹’을 ‘최진실 사채설 내용 뒤흔기어…’(동아일보), ‘고 안재환 채무액 100억 원대?’(조선일보), “‘바지사장 내세워 사채업’ 의혹 증폭’(중앙일보)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방송 매체 역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해 케이블TV의 각종 연예정보 프로그램 등도 안재환, 최진실 씨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 현장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가 하면 장례 절차를 쫓아 유족과 지인들의 통곡 모습을 여과 없이 경쟁적으로 생중계 하는 데 몰두했다.

기성언론과 인터넷 언론이 서로 주고받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은 쉽게 목격된다. 그럴수록 해당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달기와 믿거나 말거나식의 보도를 설익은 채로 내놓아 피해를 확산시킨다.

경쟁은 늘어나지만 경쟁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과 규칙은 간과되거나 거부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미처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피해, 희생은 더욱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결론 및 대안제시 - 어떻게 해야 하나

1. 언론사와 기자의 관점에서

자살률 증가와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⁹⁾은 언론계 내부

9) 미디어 오늘(2007년 2월12일자) ‘생명인권본부, 정다빈 사건 대언론 시민 권고사항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인용한다. “생명인권운동본부(공동대표 조용범)는 10일 발표한 ‘연예인 연쇄자살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유명연예인들의 1~2월 연쇄자살사건은 다면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정확히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명인권본부는 1996년 1월1일 서지원의 자살, 1월6일 김광석 자살, 1월13일 이상민의 자살시도가 이어졌으며, 지나 2004년 2월4일에는 안상영 부산시장, 3월11일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4월30일엔 박태영 전남지사 자살이 발생했고, 지난 2005년 2월22일 이은주 자살사건 이후엔 시민들의 자살이 1.78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생명인권본부는 연예인 또는 유명인들의 자살이 또다른 연예인이나 무고한 시민들의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생명인권본부는 또한 “언론이 유명연예인의

에서도 제기될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간의 경쟁 심화와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수많은 매체의 등장으로 경쟁이 격화되어 ‘내가 기사화하지 않아도 타매체, 타사가 보도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이다. 기자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타사, 타매체와의 경쟁에 대한 부담은 신중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은커녕 각 언론사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조차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따라서 매우 역설적이지만 자율규제가 보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절실하다. 형사적 처벌은 언론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가급적 민사처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¹⁰⁾를 원용하여 매체의 영향력이나 법익침해의 정도, 선정성 여부 등을 따져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자율제도가 잘 정비, 운용될 때 자율규제장치가 보다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영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한번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삼시간에 전국, 전세계로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어 더더욱 신중함이 요구되지만, 매체환경 변화 및 그에 따른 과잉경쟁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법익보호에 대한 주의가 결여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자율규제장치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언론사 또한 경쟁적·선정적 보도에 앞서 법익 보호에 대한 주의를 우선적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살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또한 자주 보도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자살위험에 더 노출되며, 언론이 자살홍보 매체가 될 위험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자제를 부탁한다”며 “자살사건을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나 이익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 및 악용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사피해구제수단의 일종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으로써 보다 높은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미디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와 개인법의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두 기둥이다. 그러나 이들은 때로 서로 상충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언론, 책임있는 언론을 만드는 1차적 책임은 미디어 제작진에게 있다. 그러나 2차적 책임은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최근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익 의식이 향상된 분위기를 반영하여, 방송법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각 언론사와 방송사들은 내부에 ombudsman이나 시청자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소비자들은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현명한 미디어 소비자가 되어 자살보도와 같이 민감하고 영향력이 큰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깨어있는 미디어 소비자들이 자율적이고 보다 책임있는 언론사를 견인해낼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비평' 영역은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에게도 미디어 비평에 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디어 소비자는 자신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디어 제작진들의 개인적 법익 침해, 흥미위주의 자살사건 보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임해야 한다.

매일처럼 접하는 신문, 방송, 인터넷 미디어 등에 대해 기본적 이해와 지식은 현명한 미디어 소비자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미디어 역시 미디어 소비자가 없이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자들은 기존의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할 때에야 비로소 미디어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역시 미디어 소비자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관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그동안 꾸준히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모색하여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기존의 정정·반론보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보상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인터넷 신문도 언론중재 및 시정권고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2009년에는 언론사닷컴 및 포털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는 등 매체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피해구제의 범위 및 방법 또한 변화해왔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조 속에 정치적 논란 없이 균형있게 자리매김해온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법익침해보도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사의 자율을 존중하여 비공개로 시정권고를 해오는 데 그치고 있다. ‘시정권고’는 강제성 없는 ‘권고’에만 그치고 있어 재발방지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매체의 수가 늘어나고 위반사례가 다양화되면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다변화, 입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도 시정권고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더욱 절실해졌다. 인터넷의 특성상 일단 한번 보도가 나가게 되면 설혹 뒤늦게 삭제한다고 해도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이미 확산된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언론사 및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시 자살보도와 관련한 개인법익침해 사례에 대한 강의를 강화해야 하며, 포털과 인터넷 매체, 트위터 등 각 매체별 특성에 부합한 피해구제 법리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함께 언론중재법상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 속에 자살보도로 인한 개인 법익침해에 대해 실질적 법익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시정권고 사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해당 언론사가 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로 2006년 언론중재법 시정권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언론중재법 제32조제4항)은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와 같은 외부공표 여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실시¹¹⁾한 바 있어, 언론중재위원회가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정권고 사항을 해당 언론사가 공개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정권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참고문헌>

1. 김창룡. 김창룡의 미디어 비평 노트(2010, 이담출판사)
2. THE TIMES, JOURNALISTS' STAFF HANDBOOK
3.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2007년 개정판)
4. 김옥조. 미디어 윤리(2001, 중앙 M&B)
5. 김창룡. 인터넷 시대, 실전취재보도론(2007, 커뮤니케이션북스)
6. 언론중재위원회.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2008, 언론중재위원회)
7.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2008, 언론중재위원회)

11) 헌법재판소, 2006. 6. 29. 2005헌마165 등 결정

패널 토론

이 충 현 (KBS 의학전문기자)

박 효 순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이 충 헌

(KBS 의학전문기자)

다리 난간을 잡고 주저하는 어린 아들을 아버지가 떠뺍니다.

이어 아버지도 다리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 대교에서 43살 김 모씨와 11살 아들이 잇따라 투신해 숨졌습니다.

김씨는 2년전 아내를 잃은 뒤 대리운전 일을 하며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2010. 9. 13 KBS 9시 뉴스>

자살은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전염성을 갖고 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 자살충동이 심해진다. 자살이 현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은 모방 자살을 부를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애주 의원실에서 유명 연예인 자살 후 자살 증가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 수가 두 달간 30% 늘어 평균 606명이 더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자살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지난 2004년 7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언론의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유명인 자살 사건 발생시 각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하고 연 1회 정도 기자협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권고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보도가 지난 2006년 29%에서 지난해 60%로 오히려 크게 늘었다.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독자와 시청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자 하는 미디어의 속성상 언론 스스로 절제된 자살보도를 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기자들에게 숙지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자살 등 사건사고를 다루는 사

회부 기자들은 대다수가 초년병으로 1년에 한 번씩 바뀔뿐더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 권고기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언론보도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언론이 자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KBS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뒤 방송을 통해 사과를 하고 자살 보도에 대한 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일련의 대책을 세웠다. 강제성 있는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항구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때문에 언론사가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불가피하다. ‘시정권고’에만 그칠게 아니라 해당 언론사가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박 효 순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자살은 일단 뉴스가치가 큰 사건이므로 언론보도의 주요 대상

우리 사회에서 자살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연예스타를 비롯해 유명·유력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수시로 뉴스에 오르내린다. 상반기에 텔런트 최진영 씨가 누나 최진실 씨의 뒤를 이어 자살해 한 가족사의 불행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하반기에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의 자살이 큰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가 동반자살하는 일도 일부 젊은층 사이에 번지고 있다. TV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살하면 ‘상투적인 결말’로 치부될 정도다. 자살바이러스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다.

자살은 대표적인 사건기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사건이 터지면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하게 된다. 그러나 주제발표에서 나타났듯이 자살 언론보도의 80% 이상이 권고안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이를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자살 보도상의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 기사를 다루는 데 지금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기자협회가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만든 <자살 언론보도 권고안>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지나친) 속보, 후속보도 경쟁이 문제의 기사를 생산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자살소식이 전해지면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은 관련 기사로 도배된다. 첫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추가 취재를 통해 실로 다채로운(?) 기사가 보도된다. 즉 타사, 타매체와의 경쟁적인 보도행태다. 이런 보도경쟁이 문제의 기사를 생산하는 원인이라는 김창룡 교수의 지적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 실제로 큰 자살사건이 터지면 기자가 갖는 심리적 부담은 적지 않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명확한 발표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저해하는 요소다. 기사는 시간이 되면 데스크로 어김없이 전송돼야 한다(데드라인이다). 특히 외국 스타 연예인(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마련인데, 이런 취재환경의 어려

움 속에서 추측보도와 인용보도로 인한 오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인과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에게(신문사와 기자도 부메랑을 맞는 형국-신뢰도 저하, 피소 등)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자살 언론보도 권고안>이나 언론사 자체 윤리규정 등의 준수가 더욱 요청되는 대목이다.

<자살 언론보도 권고안>의 인식 확대 및 중요성을 환기해야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속보경쟁 및 후속보도에 대한 부담 속에서 자살 언론보도 권고안(수칙)을 제대로 지키면서(늘 염두에 두면서) 기사를 쓰기란 쉽지 않다. 또 권고안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신문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출입처 이동이 있는데, 문화부나 경제부에서 사회부로 온 기자가 경찰을 출입하면서 자살 사건 기사를 갑자기 접하다 보면 더욱 그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데스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살 언론보도 권고안>을 일선기자와 데스크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협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나서서 권고안뿐 아니라 언론중재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 등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든 보도자료에 자살예방 권고 가이드라인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또 자살예방 관련 담당기자 및 사회부 데스크들과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연간 1~2회 정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제작할 때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 자문보다 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전문가 그룹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따라서 이에 적용할 만한 권고안도 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미디어의 자살보도는 약인가 독인가...모방자살을 촉발?

주제발표에서 보듯이 자살률 증가와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 또는 유명인들의 자살이 또 다른 연예인이나 고통과 실의 속에 있는 일반 국민의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살의 전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겼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나오는 자살 기사들이 비슷한 현실적·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잠재적인 자살 시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 자살해 대대적인 보도가 이뤄진 달에는 자살자 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대 의대 정신과 윤대현 교수에 따르면 TV보다 신문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한다. 자살한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나 자살의 원인(추측), 가족 인터뷰 등의 세부 자료를 실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다시 보기가 쉬운 것이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자살보도를 다루는 언론매체 수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론 세 곳에서 자살보도를 하는 경우, 한 곳에서만 보도할 때보다 모방자살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요즘 일간지만 해도 수십개가 넘는 언론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자살보도 자체가 자살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연중 시리즈로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에 대한 기획보도 필요성

그렇다면 언론에서 기사를 안쓰면 자살이 줄어든다는 얘긴가? 이와 관련 윤대현 교수는 최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언론계의 적극적인 관심은 자살을 예방하는 보루가 될 수 있다”면서 “자살을 막으려면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마케팅(Social marketing)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심장병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장을 살려내는 응급서비스 등 진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고혈압 및 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운동·금연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1차, 2차 예방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자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살의 위험 요인인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문제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업무 및 학업 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인식 변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자살사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전문가의 견해를 더 비중있게),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의 관심 제고와 국가적인 투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획보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자살보도에 대한 언론중재는 의도성이나 악의성 판정이 중요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나 각 언론사의 윤리강령 등 자율규제가 보다 영향력을 갖

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익적으로 생산한 (본의 아닌) 문제성 기사 때문에 (뜻하지 않게) 제소를 당하거나 고소고발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언론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서 점점 벗어나 기사를 생산한 기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민사-형사 책임까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자살 보도에 대한 언론 중재나 소송 건은 무엇보다 의도성이나 악의성을 제대로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법률이나 제도의 잣대를 다른 종류의 기사(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쓸 개연성이 높은 종류)와 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선에서 중재하는 방안이 더 모색돼야 할 것이다. 기자나 언론사들도 한번 기사가 뜨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삼시간에 전국, 전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컨대 기사만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 매체 수백, 수천 곳을 대상으로 일반 메일이나 공문을 보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